성주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년 월 일
발 의 자 : 도정태의원외6인

1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을 반영하고, 기타 법령제명 및 본문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보완

- “성주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를 “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함

나.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(안 제1조)

다. “군정 연설”을 “시정연설”로 수정(안 제58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제44조, 제45조, 제47조 및 같음 법 시행령 제54조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

1) 개정조례 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성주군 조례 제　　호

성주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성주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를 “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 및 제39조, 제41조,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4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, 제45조,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중 “실시 및”을 “실시와”로, “심의・의결하며,”를 “심의・의결하고,”로 “안건을 처리하고, 또한”을 “안건의 처리와”로 “군정 연설”을 “시정연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명 성주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	**제명 성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**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**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 및 제39조, 제41조,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4**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**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, 제45조,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** ----------.
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 **(생 략)**	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 **(현행과 같음)**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**실시 및** 다음연도 예산안을 **심의·의결하며,** 기타 의회에 발의·제출된 **안건을 처리하고, 또한**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**군정 연설**을 들을 수 있다.	②---------- **실시와** ---------- **심의·의결하고,** ---------- **안건의 처리와** ---------- **시정연설** ----------.
③**(생 략)**	③**(현행과 같음)**